

충청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4년 4월 11일

나. 회부일자 : 1994년 4월 12일

3. 제안이유

- 상훈법시행령 제2조에서 공적심사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현재까지 충청북도가 실시하는 포상수여에 따른 공적심사를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여 왔으나 (충청북도포상조례 제10조 제2항)
- '93.12.27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제4613호)에 따라 재구성된 인사위원회에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자가 포함(외부인사 2명)되어 있어 상훈법시행령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 상훈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맞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포상조례를 개정

4. 주요골자

- 공적심의 기관 변경 : 인사위원회 → 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
-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 공정심사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검토의견

충청북도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충청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포상수여는 상훈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한 충청북도포상조례에 의해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3. 12. 27 개정된 지방공무원법과 상훈법시행령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에 관련한 내용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상훈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맞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주요내용 으로는

현행 공적심의기관인 인사위원회명칭을 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련한 조례조문을 신설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충된 법조문에 의한 포상관련 조례의 표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관련 규정을

상훈법시행령 규정에 맞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6. 첨 부

. 충청북도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